

개정 전	개정 후
<p><u>1년(「건축법」에 따른 신축 ·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) 이내에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</u></p>	
<p><u>2.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 · 원천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 ·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(신성장동력 · 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한다)</u></p>	
<p><u>3.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</u></p>	